

의안번호	제596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자율신설 기준 폐지 및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분장사무 변경(안 제10조제2호)
  - 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
→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
-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삭제(안 제65조)
- 자율신설기구 존속기한 삭제: 과학인재국, 바이오식품의약국

## 3. 의안전문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호 중 “문화재지정”을 “국가유산 지정”으로 한다.

제7장(제65조)을 삭제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
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
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14. (생략)</p> <p><u>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</u></p> <p><u>제65조(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)</u></p> <p>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부, 행정수요 지속 여부,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 <p>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	<p>제10조(문화체육관광국)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국가유산 지정</u> ----- -----</p> <p>3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
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은 2024  
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 
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
부칙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
바이오식품의약국의 존속기한  
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  
다.

<삭 제>

충청북도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 
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
부칙

<삭 제>

## 관련 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<삭제> 제9조의2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⑤ (생략)

### 【국가유산기본법】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산”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
2. ~ 4. (생략)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자율신설 기준 폐지 및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